

행정기관명

수신자
(경유)

제 목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거부 통보서

「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4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로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등록이 거부되었음을 통보합니다.

신청 구분	[] 소농직접지불금 [] 면적직접지불금 ※ [] 해당란에 "√" 표시
거부 사유	

등록거부 내용

등록 신청인	성명 (법인명)		생년월일 (법인등록번호)						
	주소								
신청 내용	농지등 소재지			소농직접지불금		면적직접지불금			
	읍·면	리·동	지번 (임시지번)	합계	신청면적(㎡)		합계	신청면적(㎡)	
					작물재배	휴경		작물재배	휴경

* 위의 등록거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
· 시장·군수·구청장 직인

기안자 직위(직급) 서명 검토자 직위(직급)서명 결재권자 직위(직급)서명

협조자

시행 처리과-일련번호(시행일자) 접수 처리과명-일련번호(접수일자)

우 주소 / 홈페이지 주소

전화() 전송() /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/ 공개구분